

「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발 의 자: 이정희 의원(1인)

다. 찬 성 자: 김낙관, 김민성, 김영태, 김정도, 박세채,
장세구 의원(6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이 정 희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존재하는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·관리하고, 이를 활용함으로써 민족문화의 계승과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,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명 개정
-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경비의 보조(안 제5조)
- 실태조사 및 기록화(안 제6조)
- 국가유산 교육(안 제7조~제8조)
- 국가유산 활용사업(안 제9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4조, 제11조, 제14조, 제25조, 제27조
 -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2조의2, 제22조의6, 제43조, 제72조
 -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 -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4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9. 2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시행(2024. 5. 17.)에 따라 구미시 관할 내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국가 정책 변화에 맞춰 ‘문화재’ 개념을 ‘국가유산’으로 전환함으로써 법령과의 일치를 도모하고, 행정적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실태조사 및 기록화(안 제6조) 추진 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 인력의 확보와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하며, 국가유산 교육 및 활용사업 또한 주민 참여 확대와 청소년·학생 대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.
- 또한, 관내 국가유산의 배경과 의미를 지역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설명 안내, 축제 연계 등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홍보 강화를 위한 집행부서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

- 구미시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홍보 및 자료 공유 필요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